

강원도립대학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규정

(제정) 1999-06-28 규정 제055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 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.)에서 발급하는 사실 및 실적 등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적용)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.<개정 2016.4.25.>

제3조(종류 및 요율)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 수수료의 종류와 요율은 (별표)와 같다.<개정 2016.4.25.>

제4조(기준) 제3조 (별표)에 규정된 제 증명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수인이 명기하여 제 증명 등을 신청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제5조(징수방법) 신청인은 제 증명을 발급받은 직후 수수료를 강원도립대학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, 수수료 금액을 발급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6조(기납수수료의 불환급)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감면)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(1999. 6. 28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제증명 등 수수료의 금액표

증명의 종류					수 수 료	비 고
1.	입	학	증	명	300원	※금액은 1건당 수수료액 ※외국문증명서는 500원씩
2.	합	격	증	명	300원	
3.	재	학	증	명	300원	
4.	휴	학	증	명	300원	
5.	복	학	증	명	300원	
6.	재	적	증	명	300원	
7.	제	적	증	명	300원	
8.	수	료 (예 정)	증	명	300원	
9.	졸	업 (예 정)	증	명	300원	
10.	성	적	증	명	300원	
11.	학	위 수 여 (예 정)	증	명	300원	
12.	학	적 부 (생 활 기 록 부)	증	명	300원	
13.	교	육 비	납 입	증	명	
14.	교	직 원	경 력	증	명	
15.	공	사 등	납 품 실 적	증	명	
16.	기	타	제	증	명	